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3255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대학캠퍼스 주식회사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2. 26.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

1. 피고가 2013. 7.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분 재산세 409.659.090원, 지역자원시설세 221,256,580원, 지방교육세 52,520,390원의 각 부과처분,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분 재산세 466,653,420원, 지역자원시설세 333,196,910원, 지방교육세 59,827,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187 295,000㎡(이하 '학교 부지'라 한다) 지상에 송도 글로벌대학캠퍼스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의 협약에 따라 2009. 3. 26.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12. 23.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원고가 인천광역시 소유의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0-2 94,273.8㎡(이하 '수익용 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개발이익금으로 학교 부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인천광역시에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수익용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이에 체결된 2010. 10. 26.자 협약에 따라 수익용 부지의 개발이익금 및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삼아 2011. 8.경 학교 부지에 캠퍼스를 준공하여 2012. 7. 27. 학교 부지 중 1, 2공구에 강의연구동, 도서관, 기숙사, 교수아파트, 주차장, 대학지원시설 등 연면적 합계 229,20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2. 12. 13.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3년분 재산세 441,899,550원, 지역자원시설세 241,092,290원, 지방교육세 56,653,790원을 부과하였고, 2014. 7. 8.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하여 2014년분 재산세 466,653,420원, 지역자원시설세 338,788,930원, 지방교육세 59,827,360원을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18. 2013년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 중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배척하였고, 이 사건 건축물 중 [redacted]대학교가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15,004.36㎡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이 부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4. 9. 12.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 중 [redacted]대학교가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32,240,460원, 지역자원시설세 19,835,710원, 지방교육세 4,133,400원을 환급하였고, 같은 날 2014년분 지역자원시설세 중 한도초과액 5,592,200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위 라.항의 각 부과처분 중 환급되지 않은 나머지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재산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 이 사건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redacted]청과 사이에 체결된 수익용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 사업협약 등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redacted]시에게 이전하여야 할 뿐,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권리가 없고,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캠퍼스의 사용·수익권은 [redacted]시가 [redacted]을 통하여 행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각 재산세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원고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없는 이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정한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인천광역시이므로 특정부동산인 이 사건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도 위법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 즉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두1504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redacted]청은 2008. 11.경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안을 작성하였는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50%는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으로 조달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소유의 수익용 부지를 이 사건 조성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법인에게 매도하여 개발하도록 한 후 그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하기로 정하였다. 또한 그와 같은 특수목적법인은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수익용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 중 캠퍼스 건설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잔여분은 향후 [redacted]시가 캠퍼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설립할 재단의 기금으로 출연하기로 계획하였다.

② 원고는 2009. 3. 26. 이 사건 조성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원고의 정관에는 위 [redacted]청의 계획안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성사업의 재원 중 25%는 국가 보조금, 25%는 [redacted]시의 보조금, 50%는 [redacted]시로부터 매수한 수익용 부지의 개발이익금으로 조달하기로 정하였다.

③ 원고는 2009. 12. 23. [redacted]청과 사이에 수익용 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 435,073,587,000원 중 45,140,746,55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원고가 수익용 부지를 개발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금으로 학교 부지에 캠퍼스를 신축하여 이를 [redacted]시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redacted]시에 기부하기로 정하였다.

④ 원고는 2010. 10. 26. [redacted]청과 사이에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는 [redacted]청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조성사업을 수행하고, 수익용 부지의 개발이익으로 학교 부지에 대한 캠퍼스 조성비의 50%를 충당한다.
- 원고는 수익용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금 중 위 캠퍼스 조성비 및 원고의 주주에 대한 배당금(원고의 설립자본금 5억 원, 우선주 12%, 보통주 11%)을 지급하고 남는 개발이익금을 인천광역시에 귀속시키기로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⑤ [redacted]시는 2010. 10. 18. [redacted]대학 운영의 지원 및 관리, 외국 교육기관 등의 유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redacted]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2. 2. 21. 지식경제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날 [redacted](이하 '운영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운영재단의 정관에는 [redacted]시장이 이사장이 되어 재단을 대표하고, 해산 시 잔여재산은 [redacted]시에 귀속되며, 그 목적사업으로 [redacted]대학의 시설관리 및 운영, [redacted]대학의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 임대사업, 캠퍼스 등 시설의 추가 확장 및 확충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⑥ [redacted]청은 운영재단이 설립되기 전인 2010. 12. 1. [redacted]대학교와 사이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지원계약을 체결하였다.

⑦ 운영재단은 2012. 2. 28.경 [redacted]와 사이에 캠퍼스 구내식당에 관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운영재단은 2012. 4. 23. 재단법인 [redacted]연구소와, 2012. 6. 29. 재단법인 [redacted] 및 [redacted]와, 2012. 12. 1. [redacted]대학교와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료는 운영재단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정하였다

⑧ 원고는 2012. 11.경 운영재단과 사이에 [redacted]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캠퍼스의 시설관리 및 운영, 원고가 캠퍼스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계약한 모든 용역 업무, 원고가 [redacted] 및 [redacted]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운영재단에게 위탁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원고가 [redacted]시에게 위탁대상 시설물을 기부채납(소유권이전)하는 날까지로 정하였다.

⑨ 원고는 2012. 12. 31. 운영재단과 사이에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건축물 중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대학지원시설 2039호를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대료는 원고와 운영재단 사이의 위·수탁계약이 종료할 때까지는 감면하기로 정하였으며, 관리비 월 327만 원을 운영재단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3)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인천광역시와 사이에 수익용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 이 사건 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통해 국가 및 [redacted]시의 보조금과 수익용 부지의 개발이익금을 재원으로 삼아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여 인천광역시에게 이전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인다.

또한 [redacted]시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이 진행되기도 전인 2010. 10. 18.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한 캠퍼스 단지를 운영하고 관리할 목적의 운영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운영재단은 구내식당 운영계약 체결하고,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건축물을 운영하고 관리하다가 2012. 11.경 원고와 사이에 [redacted]시설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또한 운영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원고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지방교육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라. 이 사건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의 하나로 제2호에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특정부동산'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 제143조 제7호에서 그 납세의무자를 '특정부동산의 소유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위 제143조 제7호의 규정은 제107조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서 그 문언만 놓고 보면, 제107조와 달리 특정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그 법률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개정연혁, 그리고 과세기준일과 납기, 비과세 등에 관하여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위 제143조 제7호의 '특정부동산의 소유자'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와 마찬가지로 그 부동산에 관한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함으로써 공공시설로부터 실질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제1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나타나듯이 소방시설 등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구현된 세목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부동산으로 인하여 공공시설로부터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향유하는 자를 그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규정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9조 내지 제242조의 공동시설세에 관한 규정에서 따온 것인데, 그 제239조에서는 공동시설세의 납세의무자를 '소방시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이익을 받는 부동산의 법률상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 이익을 향유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연혁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지역자원시설의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당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사실상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석규

판사 장규형

판사 홍지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1-16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하 이 장에서 "특정부동산"이라 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의 납세의무자